

연구부정논문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철회 절차 안내서

□ 연구부정논문의 KCI 철회 절차

논문 철회 판정	KCI 논문 철회 요청	KCI DB 반영
학술단체 자체 규정에 따라 논문 철회 여부 판정	논문 철회 판정 시, 재단에 통보 및 KCI DB에 반영 요청	제출서류 확인 후 KCI DB에 반영*
학술단체	학술단체 → 재단	재단

* KCI DB 반영 내용: ❶ 철회사유 명기, ❷  아이콘 부착, ❸ 원문에 'RETRACTED' 워터마크 삽입

□ KCI 논문 철회 요청 방법

-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학술단체장 명의의 철회 요청 공문 송부
 - (공문기재사항) 학술지 정보(학술지명, 권/호, 발행년월 등), 논문 정보(제목, 저자 등), 철회 사유, 조치사항
 - (제출필요서류) ❶ 철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, ❷ 「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」에 따른 6가지 조치사항 증빙(※ [별첨2] 참조)

연번	항목	비고
1	해당 철회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여부 증빙	
2	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(최소 3년 이상) 조치 여부 증빙	
3	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여부 증빙	
4	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(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)을 통보 여부 증빙	❶ 회의록 포함
5	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여부 증빙	
6	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여부 증빙	
7	KCI 논문 철회 동의서 및 약약서(미제출 시 공문에 사유 기재)	[별첨1] 양식

□ 관련 문의처: 한국연구재단 학술데이터분석팀

- ☎ 042-869-6674 / ✉ kciadmin@nrf.re.kr

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논문 철회 동의서 및 확약서

본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에 등록된 논문의 저자로서, 아래 논문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또한, 아래 논문이 KCI 등재(후보) 학술지 논문으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내 개인 연구업적 등으로 활용한 경우, 해당 기관(소속 기관 및 연구지원기관 포함)에 통보하고 철회 요청할 것을 확약합니다.

- 학술지명 :
- 게재년월일 :
- 논문명 :
- 저자명 :

20○○년 ○○월 ○○일

저자 ○ ○ ○ (서명)

저자 ○ ○ ○ (서명)

별첨2

KCI 논문 철회 조치사항 상세 안내자료

KCI 우수등재, 등재(후보)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,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■ **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(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)**

① 학술지(우수등재학술지, 등재학술지, 등재후보학술지)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, 일정 사유로 수정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, 2016.10.18., 2017.04.06., 2022.04.14.)

1.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

보완 설명

KCI(www.kci.go.kr) 외 타 웹사이트에서 논문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, 해당 논문 페이지에 **철회 사실 및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**하고 재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.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(최소 3년 이상)

3.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

보완 설명

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음을 **학술지 발행기관 또는 학술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판정 직후 발행되는 학술지 권·호에 철회 사실 및 사유, 조치사항** 등을 공지하고 재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(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)을 통보

보완 설명

연구부정행위 논문의 **철회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**(윤리위원회, 편집위원회 회의록 등)와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각 항에 따른 조치사항 증빙을 **공문으로 재단에 통보**하여야 합니다.

※ 공문에 포함 할 사항: **학술지명, 발행연월(권호정보), 논문제목, 저자, 철회사유, 조치사항**

5.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

보완 설명
철회 논문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일 경우, 해당 기관 담당부서에 논문 철회 사실 및 사유,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고, 통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6.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

보완 설명
해당 논문의 철회 사실 및 사유, 조치사항을 논문 저자(교신저자 및 공저자 포함)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, 통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② 삭제 (2016.10.18.)
- ③ **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, 재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또한 재단의 2회 이상의 조치요청에도 관리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각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(개정, 2016.10.18., 2020.03.30.)**

발생횟수	처리내용	비고
1회 발생	- 3년간 학술단체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	※ 판정년도부터 3년간 ※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차년도부터 3년간
2회째 발생 (1회 발생이후 5년 이내)	- 우수등재학술지, 등재학술지,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	※ 차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신규평가에 신청할 수 있음

■ KCI 논문 철회 동의서 및 협약서

- 철회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, 철회 논문의 모든 저자로부터 동의서 및 협약서 접수([별첨1] 양식 참조)